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81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국기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5년 3월 4일
- 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 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김국기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가독성을 높이고,
- 지속가능한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2조에서 제1호로 구분되어 있던 조문을 정비(안 제2조)
-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, “육성계획”을 “중장기 계획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는 2020년 11월 6일 제정된 조례로,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이고, 중복되는 용어를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였음.
- 또한, 도지사의 시책과 사업 중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계획을 ‘중장기 육성계획’으로 변경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, 이러한 개정 취지와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상품”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육성계획”을 “중장기 육성계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u></p> <p>1. <u>“관광상품”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.</u></p>	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관광상품”이란 충청북도 내에서 생산 및 제작되는 공예품, 토산품, 특산품, 민예품, 농·수·축·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인정하는 제품 등을 말한다.</u></p>
<p>제3조(시책과 사업)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관광상품 육성 및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p>1. 관광상품 개발 및 <u>육성계획 수립</u>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3조(시책과 사업) <u>도지사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<u>중장기 육성계획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